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약

2.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약」(이하 ‘특약’ 이라 한다)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 이라 한다)의 계약자(이하 ‘개인실손의 계약자’ 라 한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 사이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한다.

*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유병력자·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한다)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중지’ 라 한다)를 청약할 수 있다.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을 유지 중인 경우

2) 상기 1)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현역병*으로 입영(복무 중인 경우 포함)하거나 입영 예정인 병사인 경우

* 현역병: 병역법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을 의미하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해당하지 않음.

나. ‘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실손의 계약자의 중지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중지는 이루어진다. 계약중지일은 입영일 또는 중지 청약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개예정일 및 보험료 납입 등을 설명하고, 개인실손 재개를 위해 재개일 설정을 요청한다. 계약자가 확정된 재개일에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재개'라 한다)가 이루어진다. 다만, 계약자가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자가 중지 청약시 청약서에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재개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개인실손을 중지한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기간 중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를 청약할 수 있다.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주계약이 소멸*되면 '가'에 따른 개인실손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에 따른 재개를 청약할 수 없다. 다만, 주계약이 소멸되어도 예외적으로 개인실손 특약이 유지되는 경우는 '가'에 따른 개인실손 재개가 이루어지며, '나'에 따른 재개를 청약할 수 있다.

* 주계약의 소멸 : ①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에는 ①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함]

라. 회사가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경우 중지된 개인실손으로 재개된다. 다만, 재개시점 기준으로 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 보장개시일(재가입인 경우 재가입일)로부터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재개 시점에 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판매중인 개인실손이 없는 경우 보유*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한다.

*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란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가장 최근에 판매했던 개인실손을 말함

마. 재개 시점에 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판매중인 개인실손이 없는 경우 보유하는 개인실손)으로 재개하는 경우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범위 등은 중지된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다.

바. 회사는 재개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 또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 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등을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본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재개 청약을 승낙한다.

- 1) 보장종목
- 2) 보험가입금액
- 3) 자기부담금
- 4)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사. 회사는 ‘바’의 ‘1)’ 내지 ‘4)’ 각 사항에 대하여 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

가. 회사는 중지 또는 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중지 또는 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한다.

나. 회사는 계약자가 중지를 청약할 때에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 재개가 계약자가 확정된 재개일에 이루어진다는 점, 계약자가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가 중지 청약시 청약서에 기재한 재개예정일에 재개된다는 점, 재개 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회사는 납입최고(독촉)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중지된 실손과 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초과할 경우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실손으로 재개된다는 점, 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경우 재개 승낙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중지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다. 회사는 계약자가 재개를 청약할 때에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 중지된 실손과 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보장내용 변경 주기를 초과할 경우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실손으로 재개된다는 점, 재개되는 개인실손이 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경우 재개 승낙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및 재개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라. 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다.
- 마. 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특별조건부인수특약」(이하, ‘조건부 특약’ 이라 한다)은 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다.
- 바. 조건부 특약의 경우 중지된 개인실손의 최초가입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 사.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지 전 개인실손의 약관을, ‘4.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각각 따른다.
- 아. 개인실손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복무 중인 경우 다시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에 따라 계약자는 중지를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중지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다만,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중지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 자. 회사는 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차. ‘3. 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에 따라 개인실손 중지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4. 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에 따라 개인실손의 재개 후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다만, 휴가 중 발생하는 등 군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